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9호, 2018. 9.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민의 통일의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3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주간 행사 내용 및 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주간 행사 내용 구체화(제2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주간

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일관 지정요건 구체화(제5조의2 신설)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운영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5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년도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통일에 관한 체험활동 등 경비의 내용 구체화(제6조의2 제2항 신설)

정부는 대학 등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 현장견학 비용, 통일 문화체험 비용,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무허가·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한 경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제2조제17호 및 제18호)

- 1) 종전에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를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명확하게 함.
- 2)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

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제15조제8항·제9항, 제15조의2제3항 신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등에 관한 절차만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제44조)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바닥 등으로 구획된 건축물에 계단·복도 및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내화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제86조제7항 신설)

- 1) 공동주택의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시설·부지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 2) 공동주택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허가·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제115조의4제1항)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무신고 가축분뇨 배

출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폐쇄명령 등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함.

- 2) 무허가·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제117조제4항)

- 1) 국민편익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만으로 한정하여 신고관청과 사용승인 관청 등이 달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2)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

사.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 (별표 1)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자 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고함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실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2. 주요내용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31조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1항제3호)
-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3항 신설)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특히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서의 인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4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4.] [대법원규칙 제2800호, 2018. 8. 3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된 서류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제90조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26호, 2018. 8. 2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공동시설을 사회적기업 등의 영리행위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57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영리행위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공동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1년 이상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시설로 정하고, 해당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외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22.] [대통령령 제29118호, 2018. 8. 28.,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교 및 공공기관 외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

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에 대해 택배와 같이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를 제한하고, 면대면 화물운송사업에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 사

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벤,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제23조제1항제8호).

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9호, 2018. 8. 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

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8호, 2018. 8. 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당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50호, 2018. 8. 14.,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는 경우 시·도당에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도당에서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근거로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당에서는 당원명부와 비교·확인을 위해 기간이 오래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관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원명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8.] [대통령령 제29051호, 2018. 7.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희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